

## 부산교통공사축구단 감독 모집 공고

새롭게 도약하는 부산교통공사축구단의 발전을 위하여 능력있고 성실한 감독을 공개모집합니다.

2018. 10. 30.

### 부산교통공사 사장

1. 모집분야 및 인원 : 부산교통공사축구단 감독 1명
2. 자격요건 : 축구단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 
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
  - 가. 대한축구협회 발급 1급 이상 지도자자격증 소지자(AFC A급, P급)
  - 나. 5년 이상 선수 경력이 있는 자
  - 다. 대학·실업(k3 포함)·프로리그 3년 이상 지도자 경력이 있는 자
  - 라. 공사 인사규정 제2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3. 보수 등 근로조건 : 구단 내부규정 및 근로계약에 의함
4. 전형방법
  - 가. 1차 서류전형 → 2차 면접심사 → 3차 신체검사
  - 나. 2차 면접심사 대상자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(5배수 선정, 개별통지)
  - 다. 합격자 결정은 서류전형(30%)과 면접전형(70%)을 환산한 점수 최고 득점자로 함(개별 통지)
  - 라. 3차 신체검사는 최종합격자에 한함(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름)

## 5. 제출서류

가. 축구단 감독 지원서 1부 ☞ 붙임1

나.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동의서 1부(공사 소정 양식) ☞ 붙임2

다. 축구단 운영계획서 1부(A4용지 10매 이내, 자유 형식, 축구철학, 선수단 운영계획, 선수지도방법, 성적목표와 비전 등) ☞ 붙임3

라. 대한축구협회(KFA) 발급 1급 이상 지도자자격증 사본 1부

마. 지원서 상에 표기된 모든 경력증명서 각 1부

- 선수경력증명서, 지도자경력증명서, 수상경력증명서 등

☞ 모든 경력증명서는 대한축구협회 및 산하연맹 등에서 발급한 공인증명서만 인정

※ 공인증명서 미제출자는 해당 경력 불인정.

## 6. 지원서류 접수

가. 접수기간 : 2018. 10. 30.(화) ~ 2018. 11. 09.(금)

☞ 응시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 7일 이상 연장공고

※ 지원서 등 각종 양식은

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(<http://www.humetro.busan.kr>) 및

부산교통공사 축구단홈페이지(<http://www.humetro.busan.kr/football>)

에서 다운 가능

나.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우편(등기)접수

- 방문접수 :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제출  
(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)

- 우편접수 : 접수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
- 접수장소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44번길 20(범천동)  
부산교통공사 소통복지실

## 7. 기타사항

가.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발견 시 합격을 취소하고 손해배상, 관련 기관 통보 등 그로 인한 법적조치를 할 계획이며,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집니다

나.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, 반환청구 시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반환합니다.

다. 최종합격자 중 신체검사에 불합격 또는 공사 관련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,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※ 추가합격자 선발기간은 공사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.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교통공사 소통복지실(☎051-640-7202)로 문의바람.

## 임용결격사유

-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
-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
-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서 정하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비위면직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합격한 사람
- 비위채용자로 적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
# 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

## (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)

### 1. 일반결함

- 가.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
- 나.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질환
- 다. 난치성 사상충병(絲狀蟲病)
- 라. 중증인 고혈압증(확장기혈압 115mmHg 이상인 사람)
- 마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에 걸렸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

### 2. 비강(鼻腔)·구강·인후기관 계통

- 가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·구강·인후·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
- 나. 정상적인 식사가 곤란한 식도협착

### 3. 치아 계통

- 가. 아래턱관절 강직(強直), 저작근(咀嚼筋)의 질환 또는 악골(顎骨)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
- 나. 아래턱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 곤란하게 된 사람
- 다. 발음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

### 4. 흉부

- 가.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
- 나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
- 다.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, 중증 만성기관지염, 중증 기관지확장증, 중증 폐기종,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

### 5. 심장·혈관 및 순환기 계통(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

- 가. 심부전증(心不全症)
- 나. 발작성 빈맥(150회/분 이상) 또는 기질성 부정맥
- 다. 방실전도장애(房室傳導障礙)
- 라. 동맥류
- 마. 유착성 심낭염
- 바. 관상동맥질환
- 사. 폐성심(肺性心)

## 6.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

- 가.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 있는 비기능항진증(脾機能亢進症)
- 나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

## 7. 생식비뇨기 계통

- 가. 중증 요실금
- 나. 진행성 신기능(腎機能) 장애를 동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신질환(腎疾患)
- 다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(腎結核) 또는 생식기결핵
- 라.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(腎症候群)

## 8. 내분비 계통

- 가. 중증의 갑상선 기능 이상으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비가역적인 합병증
- 나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
- 다.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을 합병증으로 수반하는 에디슨병(만성부신피질기능부전)
- 라.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치료 또는 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
- 마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

## 9. 혈액 또는 조혈 계통(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

- 가.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
- 나. 혈소판 감소 자색반(紫色斑)
- 다. 재생불량성 빈혈
- 라. 용혈성 빈혈(용혈성 황달을 포함한다)
- 마. 진성 적혈구증가증
- 바. 백혈병

## 10. 신경 계통

- 가. 뇌졸중(腦卒中)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
- 나.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
- 다. 만성 진행성·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(腦脊髓炎)[유전성 무도병(舞蹈病), 근위축성 측색경화증, 소뇌성운동실조증(小腦性運動失調症),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]
- 라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
  - 1) 뇌종양 및 척수종양
  - 2) 외상성 신경질환
  - 3) 말초신경질환

- 4) 전신성의 신경근(神經筋) 접합부 질환
- 5)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
- 6) 뇌전증(腦電症)

## 11. 사지(四肢)

- 가. 보조 장구(裝具)를 사용하더라도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
- 나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골절·관절 질환자

## 12. 귀

-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사람

## 13. 눈

- 가.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.2 이하인 경우
- 나. 두 눈의 시야협착(視野狹窄)이 모두 2분의 1 이상인 경우
- 다.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·활동성·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각 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
- 라. 중심 시야 20° 이내의 복시(複視)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(眼球振盪)
- 마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색각 이상

## 14. 정신 계통

- 가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
- 나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
- 다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병
- 라.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